

2025년 주요 판례 및 2026년 주요 개정 법령 정리 (5) 개정법

March 3, 2026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판결과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지난 해에 선고된 중요 판례 및 당해 연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될 주요 개정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시리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2025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1) 특허, 2) 상표, 디자인 및 부정경쟁방지법, 3) 저작권, 4) 영업비밀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 및 5) 2026년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령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뉴스레터를 총 5회에 걸쳐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그 마지막 순서로 2026년도에 개정되었거나 시행 예정인 주요 법률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하였습니다.

[개정법]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8. 2. 20. 시행]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6. 6. 3. 시행]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4. 「미술진흥법」 [2026. 7. 26. 시행]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8. 2. 20. 시행]

-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제40조의6, 7, 제43조 제5항)
-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제40조의11, 제41조 제2항)
-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 도입(제40조의 12)

그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률에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뒤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유사한 내용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먼저 도입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6. 1. 29.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 2. 19. 공포되어 2년 후 2028. 2. 20. 시행될 예정입니다.¹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제도 및 ‘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생협력법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는 다음과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항목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적용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한정(‘상생협력법’)	연방 민사 사건 전반에 기본 적용(표준 절차)
개시 방식	법원 결정 중심(사실조사·보전명령은 일방의 신청, 당사자 신문은 쌍방의 신청 전제)	양 당사자 대리인이 주도적으로 “meet and confer”하여 디스커버리의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 분쟁 시 법원이 개입
현장 접근	지정전문가가 법원 결정에 따라 상대방 시설 출입·조사(질문/열람·복사/계측·실험 등)	상대방 재산·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측정·촬영·시험·샘플링) 요청 가능
진술 확보	‘당사자에 의한 신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가능	증언녹취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단, 조건에 따라 법원 별도 허가 필요), 출석 강제 가능

¹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관하여는 저희 IP그룹의 2026. 2. 4. 자 뉴스레터에서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비교 항목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제3자 관여	자료 점유·관리·보관자에게 자료보전명령 가능, 사실·자료 검증에 필요한 제3자 신문 가능	제3자 문서 제출·출석·현장검사 강제 가능
비밀·특권 보호	ACP(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관련 내용은 조사 대상/범위에서 제외	“nonprivileged” 원칙 하에 디스커버리 범위에서 ACP 사항 제외, 특권 주장 시 표시·설명 (Privilege claim) 절차 존재
불응·훼손 제재	조사·명령 불응/방해 시 사실인정 및 과태료(조사 거부·방해·기피) 제재 + 형사처벌 (보전명령 위반 고의 훼손)	불응 시 비용부담·증거배제·기각/결석판결 등 절차적 제재, ESI(전자적 저장정보) 소실은 소송상 활용 방해 의도 인정 시 강한 제재 가능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한국의 제도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진술인의 수, 신문의 범위·방법·장소 등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는 반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진행되는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는 법원의 개입 없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notice를 발송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통상 법정인 아닌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장소에서 합의한 일시에 대리인의 주도 하에 진행됩니다.²

② 한국의 제도는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의 문서제출(Document Production) 제도와 같이 폭넓은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및 서면질의(Interrogatories)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지정전문가의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③ 한국의 제도는 미국과 같이 ESI(전자적 저장정보)의 의도적 소실에 대해 특칙을 두어 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대신, 자료보전명령 고의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 자료보전명령의 실효성을 강하게 확보하고 있으나, 자료를 점유·관리·보관하는 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전명령의 대상인 자료의 ‘관련성’ 및 ‘특정’ 여부에 대해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고, 나아가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에서의 소송 대비 증거보존조치(Litigation Hold)와 같은 수준으로 실무가 확립될 수 있을지는 향후 실무례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한국의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기능하는

² 개정안 제40조의12 제1항은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이라는 문언상 양 당사자 모두의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의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문서제출요구 절차에 따라 입수한 문서·전자적 저장정보 및 증언녹취 기록 등 원자료(raw evidence) 자체가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제출·활용되고, 전문가 의견 역시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지정한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의 형태로 제출되어 반대신문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서도 상생협력법과 동일·유사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개정법률안들과 각 법률안들의 심사진행상태, 주요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안명	의안번호	심사진 행 상태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 보전 명령	당사자에 의한 신문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정호 의원 등 13인)	2203385	소관위 심사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 (ACP: X / AEO: 가능)	O	X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서일준 의원 등 12인)	2207728	소관위 심사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 (ACP: O / AEO: 가능)	X	X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송재봉 의원 등 13인)	2210890	소관위 심사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 (ACP: X / AEO: 가능)	O	목적 제한 X / 당 사자 1인 신청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진욱 의원 등 12인)	2212429	소관위 심사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 (ACP: X / AEO: X)	O	X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 (곽상언 의원 등 10인)	2213972	소관위 접수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 (ACP: O / AEO: 가능)	O	침해 증명&손해 액 산정 목적 제 한 / 당사자 1인 신청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2210900	소관위 심사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 (ACP: X / AEO: 가능)	O	목적 제한 X / 당 사자 1인 신청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2214278	소관위 접수	침해 증명&손해액 산정 (ACP: O / AEO: 가능)	O	침해 증명&손해 액 산정 목적 제 한/ 당사자 1인 신청
--	---------	-----------	------------------------------------	---	--

["ACP": Attorney-Client Privilege(변호사-의뢰인 특권) / "AEO": Attorney's Eyes Only(변호사만 열람 가능)]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6. 6. 3. 시행]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추가
-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제22조의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산업기술의 정의에 추가되고,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5. 12. 2. 공포된 위 개정법률안은 2026. 6. 3. 시행됩니다.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 제도 도입(제13조의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위 관리 계획은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관리 계획서에는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계획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법률안은 2026. 2. 1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4. 「미술진흥법」 [2026. 7. 26. 시행]

■ 판시 내용

-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도 도입(제18조, 제19조, 제20조)

2023. 7. 25. 제정되어 2024. 7. 26. 시행된 「미술진흥법」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 제도가 2026. 7. 26.부터 시행됩니다. 미술 서비스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을 의미하며, 미술 서비스업 신고 위반 등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영업폐쇄 및 과태료 처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IP그룹

• 임보경 변호사	T. 02-316-4041 E. bklim@shinkim.com
• 윤주탁 변호사	T. 02-316-4404 E. jtyoon@shinkim.com
• 이진희 변호사	T. 02-316-4328 E. jhelee@shinkim.com
• 여인범 변호사	T. 02-316-7291 E. ibyeo@shinkim.com
• 김충녕 변호사	T. 02-316-4092 E. cnykim@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주석호 변호사	T. 02-316-1759 E. shjoo@shinkim.com
• 황지원 변호사	T. 02-316-1799 E. jwhwang@shinkim.com
• 유예지 변호사	T. 02-316-7282 E. yjyu@shinkim.com
• 박민영 외국변호사	T. 02-316-1689 E. my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